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834호 2022. 3. 4.(금)

www.jeonbuk.go.kr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14호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56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8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5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9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60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10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64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11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84호 공인 등록 공고 12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85호 비영리사단법인 신규등록 공고 13
- 전라북도 공고 제2022-397호 제388회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 공고 14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2. 28.(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39

시군행정

- 전주시 고시 제2022-34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1
- 전주시 고시 제2022-35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6
- 군산시 공고 제2022-422호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1단계 4차 공사완료 공고 48
- 군산시 공고 제2002-423호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2단계 3차 공사완료 공고 50
- 남원시 고시 제2022-22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52

기 타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2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55
- 정일여자중학교 공고 제2022-7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60

회람									
-----------	--	--	--	--	--	--	--	--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14호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보건복지부와 협의(2015. 8. 21.) 결과 도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전북교육청
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전달체계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현행 도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 등: 법무행정과(행정규제심사)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아님
- 라. 입법예고: 2022. 3. 4. ~ 2022. 3. 24.(20일간)
- 마.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사회복지과
(전화 : 063-280-2413, FAX : 063-280-241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저소득지원팀(063-280-241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1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5-10 조례 제 3762호

(일부개정) 2014-12-12 조례 제 3920호

(일부개정) 2015-12-11 조례 제 4159호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저소득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라.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착용하는 복장을 말한다.
- 3.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등)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서 교복구입비 지원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에 등록된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신청절차 및 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 신청절차 및 지원방법은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② 교복구입비는 학부모 또는 해당 학생의 계좌로 입금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학적변동·전출·사망 등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여성·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2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6.] [전라북도조례 제4714호, 2019. 12.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 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중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3.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착용하는 복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과 교복구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2. 균등한 교육여건 실현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

제5조(지원대상 및 횟수)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학교 급별로 한 차례만 지원한다.

1. 현장체험학습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
2.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편입학과 전학을 포함한다)하는 모든 학생

제6조(지원방법)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 소속으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공보관, 교육혁신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 1. 제2조제1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 2. 교육복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속 재임은 4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전라북도 공고 제2022-356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4.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109호
2. 단체명칭 : (사)한국청소년심신육성회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31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정 규 용
 - 생년월일 : 1935년 11월 15일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남로 43-3
5. 주된 사업
 - 청소년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 준 례	정 규 용	

7. 허가(변경)일자 : 2022. 2. 25.

전라북도 공고 제2022-357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3월 4일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정보통신공사업 제630347호	티지삼보서비스전주센터 (티지एस) 대표 박종록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3, 4층(인후동2가)	2022.2.23.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2-360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4.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8-1-전라북도-43호
2. 단체명칭 : 전북YWCA협의회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8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이 현 순
 - 생 년 월 일 : 1957. 9. 15.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90
5. 주된 사업
 - 여성 사업, 청소년 사업, 회원 활동
 - 여성 취업, 고용확대 사업 등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정선(1957.1.15.)	이현순(1957.9.15.)	

7. 허가(변경)일자 : 2022. 2. 24.

전라북도 공고 제2022-364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4.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3-1-전라북도 - 29호
2. 단체명칭 : 희망연대
3.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1로 59(3층)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류 종 일
 - 생년월일 : 1966.08.01.
 - 주 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34, 금호어울림 101동 704호
5. 주된 사업
 - 공동체적 가치와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탁 제 홍 (1960)	류 종 일 (1966)	

7. 허가(변경)일자 : 2022. 2. 25.

전라북도 공고 제2022-384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근거하여 신규 공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3월 4일

공인의 등록

1. 공인등록 사유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2. 공인 최초사용일 : 2022년 3월 3일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기업지원과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납원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2-385호

비영리사단법인 신규등록 공고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에 따른 신규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3월 4일

1.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전주YWCA
2. 대표자 : 이현순(1957.9.15)
3. 주된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8
4. 주된 사업
 - 지역사회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위한 시민사회운동
 - 여성의 인권 향상과 사회참여,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를 위한 여성운동
 - 건강하고 주체적 청소년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사업
 -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되살리기 위한 생명 살림의 환경운동
 -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며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활동
 - 이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과 사업
5. 허가연월일 : 2022. 3. 2.
6. 허가구분 : 신규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97호

제388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3월 4일

연번	조 례 안 명	소관부서 (담당자)
1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정무기획과 김성준(063-280-2208)
2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박준영(063-280-2048)
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양봉수(063-280-4238)

※ 문의처 :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정무기획과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재난상황 공유·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및 실무팀 구성(안 별표 1 및 별표 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 : 감사관, 정책기획관, 예산과,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와 협의 완료
- 라. 입법예고 : 2021. 11. 5. ~ 11. 25.(20일간),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전라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 2. 대외협력팀
- 3. 현장파견팀
- 4. 자원지원팀
-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시·군 지원단의 위치
- 2. 시·군 자원봉사자의 규모
-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도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지원단 인력 및 자원 지원현황, 시·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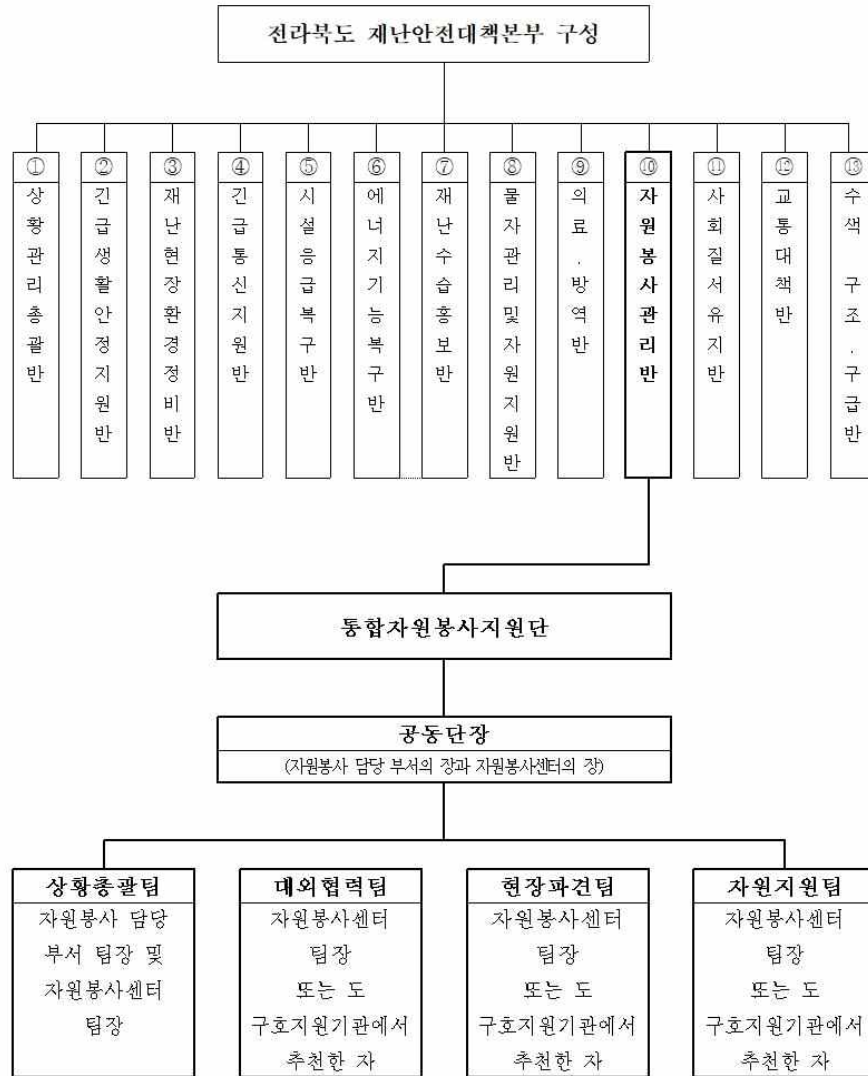
별표 7에 자연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 중 자원봉사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

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별표 8에 사회재난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중 자원봉사관리반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별표 1]

전라북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전라북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성(명)	업무
단장	· 단장(2) :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조정
상황 총괄팀	· 팀장(2): 자원봉사 담당 부서 팀장 자원봉사센터 팀장 · 팀원(3): 자원봉사 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현장본부 및 임시대피소 관리 총괄 · 비상근무체계 구축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재대본 보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수요 파악 · 관계기관(단체)과의 정보 공유
대의 협력팀	· 팀장(1):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2):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행정업무 지원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재 정적 지원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동 관련 홍보 · 시·군 및 타 기관·단체 간 협력 지원
현장 파견팀	· 팀장(1):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3): 자원봉사 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시·군 지원단 파견 · 지원단 현장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기타 현장 지 원업무 추진 · 현장별 자원봉사활동 수요조사 지원 · 자원봉사자 수송지원 · 장비운영(이동발전기, 세탁차 등) · 현장본부 및 임시대피소 운영지원
자원 지원팀	· 팀장(1): 자원봉사센터 팀장 또는 도 구호지원기관에서 추천한 자 · 팀원(2): 자원봉사센터 팀원 구호지원기관 팀원	· 시·군별 자원봉사활동 가능 자원 확보 및 지원요청 · 자원봉사자 모집·교육·현장배치 및 안전관리 지원 · 상황실 콜센터 운영(상담, 후원 등)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붙임 1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7조(실무반 편성 및 운영 등) ①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에서의 실무반 편성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별표 4와 같음
2. 비상단계
 - 가.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5와 같음
 - 나.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6과 같음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경우 실무반의 기능과 역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의 경우 : 별표 7과 같음
2. 사회재난의 경우 : 별표 8과 같음

[별표 7]

자연재난 실무반 기능과 역할(제37조제2항제1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자원봉사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정무기획과

[별표 8]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자원봉사 관리반	1.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2.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3.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정무기획과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④특별시·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7.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⑤시·군·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제정 조례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3. 작성자 : 전라북도청 정무기획과 유지현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라.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8조)

-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

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9조)

-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 감사관, 예산과, 법무행정과, 자치행정과, 여성청소년과
- 라. 기타사항 :
 - 1) 입법예고 : 2022. 1. 6. ~ 2022. 1. 25.(20일간)
 - 2)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사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라북도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지사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3. 작성자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준영(280-2048)

참고

관계법령 (발췌)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1. 개정이유

국가정책에 따른 소방현장인력 충원 및 수소산업, 인권, 청원, 중대재해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구

- 1) 본 청 : 13실·국·본부 63관·과·단 253팀 → 13실·국·본부 63관·과·단 254팀(+1팀)
 - 가) 중대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총괄팀 신설(안 제7조제1호)
- 2) 의 회 : 3담당관 9전문위원(변동없음)
- 3) 직 속 : 3원 13서 (변동없음)
- 4) 사업소 : 10사업소(변동없음)
- 5) 합의회행정기관 : 1국 2과(변동없음)

나. 정 원

- 1) 전라북도 정원의 총수 및 정원변동 내역(안 제66조)
 - 가) 정원의 총수 : 5,303명 → 5,435명 (증 132명)
 - 나) 정원변동 내역

(단위: 명)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 고
정원의 총수	5,303	5,435	132	
집행기관의 정원	1,851	1,857	6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330	3,456	126	
의회사무처의 정원	100	100	-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22	22	-	

가) 정무직 총계	:	3명 → 3명(변동없음)
나) 별정직 총계	:	14명 → 14명(변동없음)
· 1급 상당	:	1명 → 1명(변동없음)
· 4급 상당	:	7명 → 7명(변동없음)
· 5급 상당 이하	:	6명 → 6명(변동없음)
다) 일반직공무원 총계	:	1,736명 → 1,742명(증 6명)
· 2급·3급	:	3명 → 3명(변동없음)
· 3급	:	10명 → 10명(변동없음)
· 3급·4급	:	2명 → 2명(변동없음)
· 4급	:	76명 → 76명(변동없음)
· 5급 이하 소계	:	1,635명 → 1,641명(증 6명)
· 전문경력관 소계	:	10명 → 10명(변동없음)
라) 연구직 총계	:	196명 → 196명(변동없음)
· 연구관	:	38명 → 38명(변동없음)
· 연구사	:	158명 → 158명(변동없음)
마) 지도직 총계	:	24명 → 24명(변동없음)
· 지도관	:	7명 → 7명(변동없음)
· 지도사	:	17명 → 17명(변동없음)
바) 소방공무원 총계	:	3,330명 → 3,456명(증 126명)
· 소방정 총계	:	18명 → 18명(변동없음)
· 소방령 이하	:	3,312 → 3,438명(증 126명)

2)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7)

※ 직종별 정원 증감내역

(단위: 명)

구 분	현 행	개정안	증 감	비고
총 계	5,303	5,435	132	
정무직 계	3	3	변동없음	
별정직 계	14	14	변동없음	
일반직 계	1,736	1,742	6	
연구직 계	196	196	변동없음	
지도직 계	24	24	변동없음	
소방공무원 계	3,330	3,456	126	

다. 소방서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별표2)

3. 정원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소요액 : 68.2억원

(단위: 명/천원)

직종별	직급	기준호봉	인원	1인당인건비(년)	추가소요액(년)	비고
계			+132		6,828,037	
일반직	5급	연봉제	1	96,001	96,001	
	6급	21호봉	2	75,856	151,712	
	7급	16호봉	3	64,177	192,531	
소방직	소방경	26호봉	4	80,279	321,116	
	소방위	21호봉	5	77,779	388,895	
	소방장	12호봉	9	63,488	571,392	
	소방교	8호봉	19	53,190	1,010,610	
	소방사	5호봉	89	46,020	4,095,78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감사관실, 예산과 협의하였음

라. 입법예고 : 2022. 1. 21. ~ 2022. 2. 9.(20일간)

마. 비용추계서 : 붙임

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안전정책·생활안전·비상대책민방위·경보통제”를 “안전정책·생활안전·중대재해총괄·비상대책민방위·경보통제”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303명”을 “5,4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51명”을 “1,85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3,330명”을 “3,456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8조 관련)

소방서의 명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주덕진소방서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11	전주시 덕진구 일원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	전주시 완산구 일원, 임실군 일원
군산소방서	군산시 변영로 308	군산시 일원
익산소방서	익산시 무왕로 1338	익산시 일원
정읍소방서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07-5	정읍시 일원
남원소방서	남원시 요천로 1965	남원시 일원
김제소방서	김제시 벽성로 278	김제시 일원
완주소방서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518	완주군 일원
진안소방서	진안군 진안읍 쇠징계로 9	진안군 일원
장수소방서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로 136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순창소방서	순창군 순창읍 교성로 24	순창군 일원
고창소방서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94	고창군 일원
부안소방서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 86	부안군 일원

[별표 7]

전라북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68조 관련)

직 급 별	기 관 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계		5,435	-				
정무직 계		3	-				
도지사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1					1
별정직 계		14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7	1	6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일반직 계		1,742	-				
1급		-					-
2급·3급		3	2	1			
3급		10	9		1		-
3급·4급		2	2				
4급		76	56	4	5	10	1
5급 이하 소계		1,641	-				
전문경력관 소계		10	-				
연구직 계		196	-				
연구관		38	2		32	4	
연구사		158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7			7		
지도사		17	-				
소방직 계		3,456	-				
소방정		18	5		13		
소방령 이하 계		3,438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안전정책·생활안전·비상대책민방위·경보통제에 관한 사항</u></p> <p>2. ~ 4. (생략)</p> <p>제66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5,303명</u>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u>1,851명</u></p> <p>2.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u>3,330명</u></p> <p>3. 4. (생략)</p>	<p>제7조(도민안전실) ----- ---</p> <p>1. <u>안전정책·생활안전·중대재해총괄·비상대책민방위·경보통제</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66조(정원의 총수) ----- <u>5,435명</u>-----</p> <p>1. ----- ----- <u>1,857명</u></p> <p>2. ----- <u>3,456명</u></p> <p>3. 4. (현행과 같음)</p>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66조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증원(일반직 +6명, 소방직 +126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건비 : '22년부터 매년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1.7%)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건비	6,828	6,944	7,062	7,182	7,304

나. 재원조달방안 : 2022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일반·특별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행정6급 김미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6,828	6,944	7,062	7,182	7,304	35,320	
지방교부세 등	6,828	6,944	7,062	7,182	7,304	35,320	
세 출	6,828	6,944	7,062	7,182	7,304	35,320	
인건비	6,828	6,944	7,062	7,182	7,304	35,320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12. 30.>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총계	66,860	7,547	3,748	2,909	3,33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366	3,456	4,507	5,564	5,481	1,229
소방준감이하	66,860	7,547	3,748	2,909	3,337	1,618	1,627	1,399	585	11,229	4,463	2,845	4,366	3,456	4,507	5,564	5,481	1,229

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08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2. 28.(월)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2 -16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도내기업 리스크 점검 철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 </div> <p>○ 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규모*가 작아 경제적 영향은 적으나 사태 장기화 시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도내 기업 피해가 예상된다.</p> <p>- 수급 차질에 대비하여 도내 수출유관기관 TF를 구성하고 수출입 주요품목 현황 파악·공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바람.</p> <p>* 對 러시아 수출 1.9%, 수입 1.4% / 對 우크라이나 수출 0.2%, 수입 0.2%</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기업지원과 / 협조 :)</p>
2022 -17	도내 관광객 유치 위한 차별화 전략 마련	<p>○ 1인 미디어 확산으로 관광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단순 관광보다 재미와 이색체험을 앞세운 관광상품 개발·운영이 중요해졌으므로, 우리 도의 훈포역, 순례길 등 생태문명적 요소가 강한 아이템을 소재로 한 관광객 유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바람.</p> <p>○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제가 열리지 못해 지역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올 봄부터는 방역상황 및 관광객 유치·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비대면 개척을 결정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관광총괄과 / 협조 :)</p>
2022 -1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 체결 후속조치 철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 체결’(224) </div> <p>○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4년 7개월만에 재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오랜기간 중단으로 인해 재가동 시 인력 수급난이 예상되므로, 조선업 인력양성사업(국비 28.8억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모집 전 철저한 사전 유인책 마련 등 인력수급을 적극 지원하기 바람.</p> <p>○ 또한, ‘수요맞춤형·친환경·스마트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도 조선업의 체질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하여 친환경선박 건조 등 향후 완전하고 지속적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협약 체결 : 현대중공업·산업부·고용부·전북도·군산시</p> <p style="padding-left: 20px;">▶ 연간 10만톤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 생산</p> <p>* 가동 중단 : '17. 7. 1. / 재가동 : '23. 1월 예정</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주력산업과 / 협조 :)</p>
2022 -19	국가지점번호판 관리실태 점검 및 홍보 강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행안부·지자체 합동 ‘2026년까지 국가지점번호판* 전국 일제조사’ </div> <p>○ 국가지점번호는 산악 등에서 조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도민들이 알기 쉽게 국가지점번호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번호판 관리·정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p> <p>○ 또한 단순조사에 그치지 말고 번호판 설치 시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시·군과 협조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등산로 이정표, 안전사고 안내 등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p> <p>* 전국 : 74,163개 설치 / 전북 : 7,323개 설치, '22년 200개 추가 설치 예정</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토지정보과 / 협조 :)</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p>○ 코로나19 대응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확진이 창내 직원들까지 확산되고 있으므로업무누수 및 업무중단이 없도록 실·국별 업무대행체계를 수립하고 특히, 공인(공직자)으로서 안전과 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람. - 우리 도 20대 이하 확진자 비율(47.3%)이 전국(42.2%)보다 높은 실정으로, 새학기를 맞아 교육청·대학 등과 협력하여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관 : 안전정책관 / 협조 : 사회재난과, 자치행정과, 전 실·국) <hr/> <p>○ 전북테크비즈센터* 내 기업입주 공간 확보방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테크비즈센터 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TP 디지털융합센터 등 유관기관 입주비율이 높으나 잔여 미분양 공간에는 기업이 입주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인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및 기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해외 금융기업 유치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p>* 준공 : '21. 5월 / 기관·기업 입주 : 4개 기관·27개 기업(입주율 88.6%) (주관 : 혁신성장정책과 / 협조 : 투자금융과)</p>

전주시 고시 제2022-34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 주 시 장

1.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555	10	국지	2,700	철도1 덕진구 우아동1가 1057-70원	덕진구 우아동1가 1025구	일반		전주34 2022.3.4.	
기정	중로	1	9	20	보조 간선	1,650	대로1-7 여의동 1001답	대로1-11 고량동 736-6대	일반		전북135 1978.5.22	미집행 구간 실효
변경	중로	1	9	20	보조 간선	2,485	대로1-7 여의동 1001답	대로1-11 고량동 736-21대	일반	-		
기정	중로	1	17	20	보조 간선	1,505	광로2-2 덕진동2가 92-4제	대로1-1 송천동2가 1082-5제	일반	-	전북49 1987.4.30.	미집행 구간 실효
변경	중로	1	17	20	보조 간선	2,910	광로2-2 덕진동2가 92-4제	대로1-1 송천동2가 1082-13제	일반	-		
기정	중로	2	80	15*18	보조 간선	1,917	대로 3-20 호성동2가 638-3전	대로 2-1 우아동3가 602-13과	일반	덕진 공원	건설37 1976.3.27.	덕진 공원 증분
변경	중로	2	80	15*21	보조 간선	1,917	대로 3-20 호성동2가 638-3전	대로 2-1 우아동3가 747도	일반			
기정	중로	3	5	12	보조 간선	222	대로1-8 송천동1가391-35대	소로3-22 송천동1가391-96전	일반	-	건설37 1976.3.27.	미집행 구간 실효
변경	중로	3	5	12	보조 간선	437	대로1-8 송천동1가 380-29대	중로1-7 송천동1가 171-214전	일반	-		
기정	중로	3	108	12	집산	1,010	쑤고개길(국도1호선) 삼천동3가 252-5도	폐기물처리시설 삼천동3가 950-37구	일반		전주17 2010.3.12.	
변경	중로	3	108	12	집산	1,082	대로1-3 삼천동3가 252-5도	삼천동3가 960도	일반			
기정	소로	1	84	10	국지	474	중로1-9 동산동 640-4도	소로1-85 동산동 664-88대	일반	-	전북135 1978.5.22.	미집행 구간 실효
변경	소로	1	84	10	국지	433	중로1-9 여의동2가 640-4대	소로3-1160 여의동2가 655-83전	일반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34	10	집산	241	대로2-1 교동968-5도	중로3-69 교동979-1도	일반		전주34 2003.5.7.	교동
변경	소로	1	334	10	집산	241	소로2-190 교동968-5도	중로3-69 교동979-1도	일반			
기정	소로	2	190	8	국지	239	대로 2-1 교동 394-1도	중로 1-88 남노송동 74-7도	일반		진북125 1977.7.12.	추삼장구역
변경	소로	2	190	8	국지	291	소로1-334 교동 968-5도	중로 1-88 남노송동 74-7도	일반			
기정	소로	2	923	8	국지	1,515	중로1-82 성탁동616-1도	화전동 1075 장	일반		전주64 2017.5.30.	상성마을
변경	소로	2	923	8	국지	1,630	중로1-82 성탁동616-1도	덕진구 화전동 969-1제	일반			
기정	소로	3	72	6	국지	102	중로3-12 진북동 1124-237천	소로3-73 진북동 1124-227대	일반		진북49 1987.4.30.	진북동
변경	소로	3	72	6	국지	108	중로3-12 진북동 992-149도	소로3-73 진북동 1124-233대	일반			
기정	소로	3	150	6	국지	210	소로3-65 동완산동 598-4도	동완산동 464-1수	일반		진북125 1977.7.12.	동완산동
변경	소로	3	150	6	국지	105	소로3-65 동완산동 488-2수	동완산동 464-1잡	일반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연장 : 2,700m - 폭원 : 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제방도로와 연계하여 재전마을 진입로를 확장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도로
중로1-9	중로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 연장 : 1,650m→2,485m 증)835m - 폭원 : 2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보상 중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7.1.자로 실효된 노선 재결정
중로1-17	중로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 연장 : 1,335m→2,910m 증)1,315m - 폭원 : 2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보상 중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7.1.자로 실효된 노선 재결정
중로2-80	중로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확폭 - 연장 : 1,917m - 폭원 : 15m→18m → 15m→21m, 증)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원로 확장에 따라 승마장 네거리 인근 호성로에 우회전 차로를 설치한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중로3-5	중로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 연장 : 222m→437m 증)215m - 폭원 : 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보상 중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7.1.자로 실효된 노선 재결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08	중로3-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1,010m → 1,082m, 증)72m - 폭원 : 1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가 북측(소로2-911호선)으로 변경 개설되어 도로개설이 필요 없는 남측 진입도로(중로3-108) 부분 L=448m를 폐지하고, 전북권 보훈요양원 진입도로에 보도 설치를 위하여 보훈요양원까지 노선 L=520m 연장
소로1-84	소로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190m → 433m, 증)243m ※기정연장 착오정정 (474m → 190m) - 폭원 : 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보상 중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물체에 따라 2020.7.1.자로 실효된 노선 재결정
소로1-334	소로1-3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각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241m - 폭원 : 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2-190호선과 노선 연결에 따라 가각 부분 제척
소로2-190	소로2-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230m → 291m, 증)62m - 폭원 : 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호선)이 부분 해제됨에 따라 도로의 연결을 위하여 소로1-334호선까지 노선 연장
소로2-923	소로2-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1,515m → 1,630m, 증)115m - 폭원 : 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경강 제방도로까지 도로연결을 위해 노선 연장
소로3-72	소로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102m → 108m, 증)6m - 폭원 : 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2호선)의 부분실효(폭원 축소)에 따른 도로의 연결을 위하여 중로3-12호선까지 노선 연장
소로3-150	소로3-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선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 210m → 105m, 감)105m - 폭원 : 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산도서관 부지 내에 결정되어 있는 구간 폐지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93	용머리 여의주마을 생태숲공원	소공원	완산구 서완산동1가 35-1일원	-	증) 2,182.4	2,182.4	금회재정비 고시일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193	용머리 여의주마을 생태숲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 증) 2,1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소공원 반영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 체육시설 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	체육시설	다목적구장	평화동2가 322-1일원	11,779	-	11,779	진주71 2015.6.30.	한바탕 국민체육 센터
변경	9	체육시설	다목적구장	평화동2가 321-1일원	11,779	증) 6,324	18,103		

■ 체육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11,779㎡ → 18,103㎡, 증)6,324㎡ ▪ 위치 : 평화동2가 322-1 일원 → 평화동2가 321-1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권수영장 건립 ▪ 토지지번 변경사항 정비

(2) 연구시설

■ 연구시설 변경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연구시설	장동452-69일원	73,909	감) 47,027	26,882	진주32 2002.6.18.	

■ 연구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축소 : - 면적 : 73,909㎡ → 26,882㎡, 감)47,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계획이 없는 부지 폐지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	유수지	저류시설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10-2일원	-	증) 1,127	1,127	금회 재정비 고시일	대로3-6호선, 중로3-2-1호선 중복결정

■ 유수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8	유수지	·신설 : 증) 1,127㎡	· 전주초지구 우수저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고시 제2022-35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 중 수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 주 시 장

1. 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용도지구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555	10	국지 도로	2,700 (905)	덕진구 우아동1가 1057-70천	덕진구 우아동1가 1025구	일반 도로	-	전주35 2022.3.4.	()은 대상지 내 연장임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1-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연장 : 2,700m - 폭원 : 1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제방도로와 연계하여 재전마을 진입로 확장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22-422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사업 1단계4차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1-117(2021.7.30.)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시행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1단계4차 조성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3월 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 시설(도로, 녹지, 광장) 1단계 4차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3,423㎡(도로) - 금회 준공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7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7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
결정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68)	중로2-142	중로 2-142	일반 도로	-	군산고2014-141 (2014.12.26)	-
시행	중로	3	75	12	국지 도로	231 (68)	중로2-142	중로 2-142	일반 도로	-	-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퍼스트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 (주)디오션시티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퍼스트, (주)디오션시티투

5. 사업기간 : 2021. 9. 6. ~ 2021. 12. 30.

6. 사용 또는 수용 토지조서

가. 종로 2-14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3	장	42,177	1,594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2	조촌동	2-101	장	1,820	991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합계				43,997	2,585						

나. 종로 3-75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동·별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조촌동	2-33	장	42,177	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한국산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근저당	
								(주)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2	조촌동	2-101	장	1,820	829	코리아신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해성2빌딩)				
합계				43,997	838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22-423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사업 2단계3차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1-121(2021. 8. 6.)호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시행한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2단계3차 조성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22년 3월 4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2-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공공지) 2단계 3차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1,822㎡(도로) - 금회 준공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결정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군산고141 (*14.12.26)	
시행	중로	2	142	15	집산 도로	290 (120)	중로1-120	대로3-47	일반 도로	-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1245(비응도동)
 - (주)디오션시티퍼스트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 (주)디오션시티쓰리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주)디오션시티퍼스트, (주)디오션시티쓰리

5. 사업기간 : 2021. 9. 6. ~ 2021. 12.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가. 중로 2-142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인			비 고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관 계	
1	조촌동	2-33	장	42,177	1,822	코리아신타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혜성2빌딩)	한국산업 은행 (주)우리 은행 한국수출 입은행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여의도동)(전주지점)	근저당	
합 계				42,177	1,822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남원시 고시 제2022-22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남원시 고시 제2019-34호(2019.03.15.)호로 결정 고시된 남원시 월락동, 고죽동 일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4일

남 원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없음)

가. 제한지역 :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일원(남원의료원 일원)

나. 제한면적 : 51,707㎡

다. 제한사유

-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토지수용해야 할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추진 원활 및 사유재산 보호
- 설립 예상부지에 투기성 개발행위자의 난립 방지 및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공작물 등을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해야하는 주민 피해 예방 필요

라. 제한기간 : 2022. 03. 15. ~ 2024. 03. 14.(2년간)

(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일 이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 될 경우 완료일까지로 함)

마.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1개월 이상의 물건의 적치
 - 기타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시행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및 지형도면 : 계제생략

3. 관계도서를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보입니다.

붙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조서 1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 고
	시	동	지 번					성명	주 소	
	총 계			27필지		53,981	51,707			
1	남원	월락	198	-1	전	949	949	김*순	요*로 18*3(월락동)	
2	남원	월락	198	-2	전	985	985	김*엽	낙*안길 3*-14(월락동)	
3	남원	월락	198	-3	대	940	940	청주**사 문공과중중	충*로 3*8(월락동)	
4	남원	월락	198	-5	대	527	527	청주**사 문공과중중	충*로 3*8(월락동)	
5	남원	월락	198	-6	대	2,334	2,334	청주**사 문공과중중	충*로 3*8(월락동)	
6	남원	월락	198	-7	임	5	5	청주**사 문공과중중	충*로 3*8(월락동)	
7	남원	월락	198	-8	대	2,019	2,019	청주**사 문공과중중	이*번 과*리 4*8	
8	남원	월락	199	-1	전	1,431	1,431	김*순	낙**길 3*(월락동)	
9	남원	월락	199	-2	전	1,607	1,607	최*경	경기도 평택시 진*면 건**길 28, 가동 *06호(경원아파트)	
10	남원	월락	200		답	1,845	1,845	박*식	낙*길 1*(월락동)	
11	남원	월락	201		답	1,524	1,524	김*용	월*동 1*0	
12	남원	월락	202		전	1,799	1,799	이*동	인**3길 1*-1	
13	남원	월락	203		전	343	343	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로 913, 1*1동 50*호(돈암동 풍림아파트)	
14	남원	월락	204		전	1,388	1,388	이*윤	월*길 5*-4(월락동)	
15	남원	월락	205	-1	전	826	826	박*식	낙*길 1*(월락동)	
16	남원	월락	623		도	609	599	국토교통부	-	
17	남원	월락	산13	-4	임	25	25	학교법인* *학원	낙*길 17-*4(월락동)	
18	남원	월락	산25		묘	9,591	9,591	남원시	-	
19	남원	월락	산26		임	11,503	11,503	청주**사 문공과중중	충*로 3*8(월락동)	
20	남원	월락	산27	-2	임	5,864	5,864	청주**사 문공과중중	충*로 3*8(월락동)	
21	남원	월락	산27	-3	도	2,304	40	국토교통부	-	
22	남원	고죽	162		전	280	280	임*호	월*동 2*3	
23	남원	고죽	162	-4	잡	1,842	1,842	백*섭	금**1길 8-6, 10*동 2**호(금동 금동아파트)	
24	남원	고죽	162	-5	대	1,917	1,917	유한회사* *	충*로 3*8(고죽동)	
25	남원	고죽	162	-6	대	1,072	1,072	백*섭	용*로 2*7, 10*동 1**7호(도동동 부영아파트)	
26	남원	고죽	163		대	191	191	유*라	충*로 3*0(고죽동)	
27	남원	고죽	164		대	261	261	유*라	충*로 3*0(고죽동)	

전라북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2-2호

자체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불량사항 및 조치명령 발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부분(사전통지)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3. 4.

익 산 소 방 서 장

□ 공고기간: 2022. 3. 4. ~ 3. 17.(14일간)

□ 공고내용

1. 관련근거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파일론상가, '22.02.09)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22조(의견청취)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임2와 같이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이 점검 결과와 다른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사항 통지						
당사자	성명(명칭)	파일론상가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귀하					
	주 소	전북 익산시 동서로19길 67-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익산소방서	부서명	방호구조과	담당자	허지영
		주소	익산시 무왕로 1338		전화번호	063-839-3246	
		전자우편주소	hjyou314@korea.kr		팩스번호	063-839-3226	
제출기한		2022년 3월 28일 까지					

3.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가.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1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 미리 알려주시고,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839-3246)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붙임 1. 조치명령예정서 1부.
- 2.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2022 - 호			
조 치 명 령(예 정) 서			
수령인	성명: 101호 소유자 김정선, 102호 소유자 김선정, 103호 소유자 김영순, 104호 소유자 유정아, 105호 소유자 한민국, 106호, 302호, 402호 소유자 정이수, 201호 소유자 이운정, 202호 소유자 방길수, 301호 소유자 윤수원, 401호, 404호 소유자 주식회사 현율, 403호 소유자 이근재, 501호, 601호 소유자 정오종, 701호, 702호 소유자 양승무, B101호, B102호 소유자 박명희, 관리자 주형수 귀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19길 67-1 전화번호: 010-6628-1398		
조치명령 대상	대상: 파일론상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19길 67-1		
	비고:		
조치명령 구분	사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치할 내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 불임참조</td> </tr> </table>	조치할 내용	※ 불임참조
	조치할 내용	※ 불임참조	
	방법: 설치 및 보수를 요함		
기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22년 월 일			
익산소방서장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839-3246)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내역	
1.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2.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 전 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조치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니, 관계인께서는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비명	점검번호	불량내용
소화설비	2-H-016 3-C-008 3-J-003 3-H-002 3-H-002 3-K-013 3-D 3-K-016	○ 옥내소화전설비 1. 압력스위치 불량 - 주펌프 압력스위치(10K) 2. 소화전 앞 적재물 비치로 사용 장애 - 1층 누룩(냉장고 비치됨) ○ 스프링클러설비 1. MCC판넬 충전시스템 불량으로 인한 배터리 충전 불가 (MCC판넬 교체 요함) 2. 엔진펌프 연료 부족 - 추가 급유 필요 3. 4층 미용실 SP헤드 고정 불량 (노출천정에 자바라 배관 설치중 - 강관 시공 및 주배관 구경 교체요) 4. 1층 복만루 천정 노출에 따른 SP헤드 고정 불량 (노출천정에 자바라 배관 설치중 - 강관 시공 및 주배관 구경 교체요) 5. 스프링클러 주펌프 기동불량 6. 알람벨브 1차측 폐쇄상태 - 1층 - 지하1층(헤드통파) 7. 압력스위치 불량 - 주펌프 압력스위치(10K)
경보설비	15-G-002 15-I 16-A-011	○ 자동화재탐지설비 1. 발신기 불량 - 7층 2번 발신기 2. 주계단 보조계단 감지기 동작시 2번계단 감지기로 확인 ○ 비상방송설비 1. 방송선로 단락 - 4층
소화활동설비	26-D-002	○ 연결송수관 설비 1. 관창 미비치 - 5층 방수기구함
기타	31-A-001	○ 방화문 1. 옥상문 폐쇄상태 - 계단 2. 도어클로저 분리상태 - 2층 좌우 3EA

정일여자중학교 공고 제202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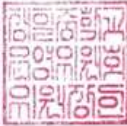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일여자중학교장

2022년 3월 4일

1. 사용개시일: 2022년 3월 1일
2. 등록 및 폐기 내역
 - 2022년 3월 1일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정일중학교로 교명 변경

신 규 공 인		
정일중학교장인 <명칭변경>	공인인영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정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명칭변경>	공인인영	
		
정일중학교회계출납원인 <명칭변경>	공인인영	
		
정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명칭변경>	공인인영	
		
정일중학교발전기금회계 학교운영위원장인 <명칭변경>	공인인영	
		

정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명칭변경>	공인인영	
		
폐기공인		
정일여자중학교장인<폐기>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인영
		
정일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폐기>	공인인영	
		
정일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폐기>	공인인영	
		
전북교특정읍교육청정일여자중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	공인인영	
		
정일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폐기>	공인인영	
		